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,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조정 함으로써 계약절차를 간소화함(안 제4조제1항)

- **종 전 :** 추정가격이 **30억원** 이상인 공사 및 **5억원** 이상인 물품·용역
- **변 경 :** 추정가격이 **50억원** 이상인 공사 및 **10억원** 이상인 물품·용역

나.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중 수해복구 관련 공사를 추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함(안 제12조)

-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

3. 개정근거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(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), 및 제108조(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)

4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7. 10. 18. ~ 2007. 11. 07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08. 1. 3)

다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"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·용역"을 "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·용역"으로 한다.

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능)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·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. 1.~ 5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기능) ①---------- ----------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·용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 영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(단, 연간 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.)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며,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. 1.~ 8. (생략) 〈신설〉 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	제12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1.~ 8. (현행과 같음) 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 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